

Editorial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를 검은 호랑이(黑虎)의 해, 임인년(壬寅年)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을 의미하는데 코로나로 찌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기운이 펼쳐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2022년 1월 크레도 매거진의 첫 번째 소식은 서울대학교 학생동아리인 '트루스포럼(Truth Forum)'에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Truth)'이라는 이름대로 트루스포럼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데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실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알리는 노력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법인 크레도의 공동대표이자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이신 이은경 변호사님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추진 중인 '평등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주신 내용입니다. 평등법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 만능주의'적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메시지에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밖에 '당신의 생각의 기원은 어디입니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세 계관에 대해 알아보는 칼럼도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점점 더 혼탁하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과 6월에는 각각 20대 대통령 선거와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022년에도 크레도 매거진이 독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반가운 손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레도 편집실

CREDO Update

“세상이 묻고 크레도가 답하다.”
최근 이슈들을 크레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서울대 트루스포럼, 교내 중앙도서관에서 ‘오해와 진실’ 전시회 개최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오해와 진실’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냉철한 사실에 기반한 역사인식, 현실인식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학생들의 힘으로 이러한 전시회를 기획하여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려고 시도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회는 보수 진영의 인물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과 보수주의의 가치, 그리고 트루스포럼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며, 그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6가지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주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

제2주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진실’,

제3주제는 ‘보수정권에 대해 경제, 복지의 영역에 있어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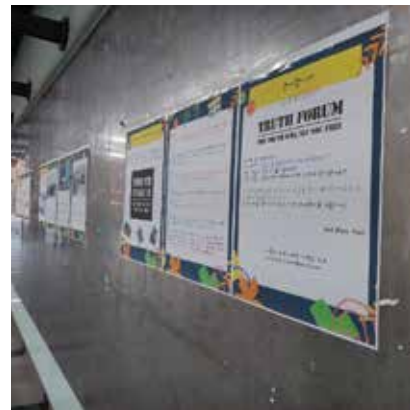
제4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들 중 음모론이라 불렸으나 추후 사실로 드러난 부분’,

제5주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가해자이고 팔레스타인은 피해자라는 오해를 푸는 내용’,

제6주제는 ‘트루스포럼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젊은이들이 보수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학창 시절부터 전교조 등 좌파 세력에 의해 주입된 오해들로 인한 경우가 많고, 서울대 트루스포럼에 대해서도 학내외 좌파세력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로 거짓 정보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김은구 대표(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와 뜻을 함께 하는 교내 학생들이 2017년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졌으며, 평균 4~50명 정도(2021년 현재 학부생은 20명 정도)의 학부와 대학원 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루스포럼은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트루스포럼이 지키려는 가치와 이슈별로 대응 및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 트루스포럼 오해와 진실 전시회

Part 1.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인물도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항항이정부의 전교조 등의 해나도 모르게 삼각같이 주입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오해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을 원했는가?

진실

-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나 조선의 재건, 즉 계급에 있어서의 회귀를 추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일찍이 전교사들로부터, 기독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당대에 상응하던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립을 꿈꿔왔습니다.

독음에서 큰 독립정신을 그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해

- 이승만은 해외에서 편파에 걸려서, 독립운동가들의 해외를 겁박했는가?

진실

- 이승만은 일찍이 해외에서 정들을 통해 위대한 한인 여사 아이들을 거두어 해외학교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본토에서 유학하여 있던 몇 여학생들을 하고,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승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미국 침략을 예견한 그의 저서 'Japan Inside Out'으로 이승만은 미국에서 영향력이 높아졌고, 이는 2차 대전 말, 차이로 건, 포츠담 선언에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해

- 이승만은 본당의 원흉인가?

진실

- 본당의 원흉은 김일정입니다. 이미 소련의 지시 아래 김일정 중심의 공산화 작업이 관료인 북한은 남한의 공산화를 계획하고 남북합장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통일선언전)

국제연에 참관 이승만은 그러한 경우 해외에서 국가 전체가 공산화되어 이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한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여 지켜낸 것입니다.

정확히 대한민국 정부만이 UN이 승인한 정통 정부로 인정되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공민들을 실어줄 것이 확실해지자, 선거를 방해하려 남로당이 공작하여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제주 4.3입니다.



출처 <https://truthforum.kr/forum/264>, 2021년 12월 8일 포스팅

TRUTH FORUM

THE TRUTH WILL SET YOU FREE

—— 트루스포럼 (Truth Forum)이란?

대학/청년 보수주의 연구, 활동 단체이다. 2016년 말, 거짓된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단체이며 서울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대학들에 각 대학별 모임이 조직되었다.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인정, 북한의 해방, 굳건한 한미동맹, 유대-기독교 세계관에 기반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활동하고 있다.

트루스포럼이 표방하는 기독교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출발하고 미국의 건국과 성장을 통해 다듬어진 사상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있는 자유,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한 본질적인 가치들이 지켜졌을 때에만 의미있는 진보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CREDO Signature

크레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사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유지해 온 ‘사회체제의 근간’이 바뀌는 법이다

이은경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공동대표

*이 글은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찬반 토론회에서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은경 변호사의 토론문입니다.



토론회가 열린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적인 시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입니다.

아래 토론문의 내용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재앙적 결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에게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치규범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법’이므로, 실은 헌법 이슈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둘째, 헌법상 여성지위와의 충돌문제, 셋째, 공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우선 법안 구성 체계는 차별 ‘개념’이 명료치 않고, ‘사유’는 논란이 많고, ‘영역’은 광범위하며, ‘구제’는 갈등과 투쟁 사회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1) 개념부터 살펴 보면, “직, 간접 차별 외에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까지 포함한 것은, 개인 간의 소통이나 SNS 등을 규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도 쉽게 혐오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구별·제한·배제 같은 차별개념이 추상적이라, 이것을 정의하는 기관에 ‘권력’이 독점되게 됩니다.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차별개념은 점진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 판단 권한을 ‘국민’이 ‘국가’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국가의 후견적, 보호자적 입장이란 미명으로 말입니다. 국가는 우월하고 국민은 열등하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권력은 비대해지고 피후견인인 국민은 의존적, 피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위나 법원이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차별 사유”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합니까?’ 하고 국가기관에 질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한 것은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더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도 바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1. 개요

이 법안은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중 자유 영역을 평등 영역으로 급격하게 옮기는 법입니다. 평등법의 제정은 ‘헌법개정지’의 발동으로 볼 정도로 ‘급진적, 혁명적’인 문

“가족형태나 상황”에 있어서도 최근 여가부가 혼인, 입양, 혈연 외의 동거형태도 가족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더불어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삶의 양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부분은 초등용 교사지침서에 이미 ‘필요한 유전자들을 결합시키는 세 부모 가족’을 다양성의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생명윤리 이슈도 맞물려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혹여 이단종파나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도 차별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난제가 많습니다. 정치나 사상의 토대인 종교적, 도덕적 논의까지 ‘차별에 해당하면 어떡하나?’하는 압박감을 준다면, ‘입 막이 법’이 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사상 통제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 등도 동성애 등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오신 박종운 변호사는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분들을 꺼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소망한다”고 하셨는데,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판단 자체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앙적 사랑의 실천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의 차별에 대한 부분도 매우 애매합니다. 예컨대, 대출자 공채를 없애라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해외 입법례도 드문 “고용형태”를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법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취업대란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3) 이 법안은 ‘공백없는 평등보호’란 미명으로 모든 영역으로 차별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던 행위들이 대폭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적 자치는 물론, 양심과 종교, 학문과 예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고, 직업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과 경영권에 대한 제약도 커짐을 의미합니다. 대신 국가의 개입과 규율권한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예배, 미사, 법회 같은 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

에 나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교육 등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적용되니,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예배당과 사찰 안으로만 종교를 가둬놓으려는 꾀변에 다름없습니다.

‘교육 영역’은 국가나 지자체에,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안 9조 4항),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확정해 놓고 이것과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못 박을 경우, 자녀들이 세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의 성’의 도입은 기존 성교육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10대 성전환 희망자들이 폭증하고, 성전환 반대를 이유로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소송지원(안 34조), 차별시정명령(안 35조) 등을 도입하고, 특히 손해액 추정, 징벌적 배상까지 인정하는 “차별구제”는 정말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차별을 받았다며 의도적으로 진정해버리면, 기존 제도보다 강력한 구제수단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컨대, n번방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성희롱 같은 차별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까지 경감해 오히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 몰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 소송사태라도 당할 경우,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권위는 이 징벌배상이 처벌이 아니라 억제에 주안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 온 일입니다.

3. 헌법 상 여성지위와의 충돌문제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36조 1항), 근로영역의 여성차별 금지(32조 4항), 여성 복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34조 3항), ‘제3의 성’ 도입은 이러한 헌법상 여성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남녀의 2분법적 성별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양성(兩性), 부부(夫婦),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모두 바꾸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구별없애기, 그러니까 성차 지우기는 '모성적 속성에 대한 평가절하'다, '여성성의 새로운 비하'다, '여성인권의 본질을 흐리는 몰타기다'란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을 성적으로 불특정한 주체라고 정의할 경우 기존에 남녀 차이로 존재하던 불평등이 다른 형태로 다시 되풀이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자 상호간도 남녀 성 역할,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들의 성역할에 근거한 상호 차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남성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화장실, 목욕탕 사용 문제 등 역차별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LA 여성목욕탕에 입장한 남성 보도는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례대표, 여성 사외이사 할당 등도 재조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공기업과 이사회의 성소수자 할당제 등이 논의되던데, 일부러 성소수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오용사례도 속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본의 아니게 제3의 성을 권장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공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 권리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조문검토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대로 하려면, 각종 법 개정, 정부 및 민간 조직과 교육과정 재편 등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평등법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재정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반하지 않은 논의는 반쪽짜리 토론회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법의 '필요성부터 실효성, 부작용, 입법 여파, 사회적 비용' 등 모든 쟁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적극적인 찬반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차별논쟁'만 벌였습니다. 게다가 평등법 반대론자들은 평등의 적이며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견해를 짓밟는 '민주주의 죽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등법만 제정되면, 차별, 억압, 착취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을 잘 활용하고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불식하는 게 현명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1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 주최로 진행된 평등법(차별금지법)토론회 토론자 단체 사진

02 토론 중인 이은경 변호사

사진출처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50954

위기상황의 보건의료거버넌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3) 영국 보건의료분야의 민관협력

이진영 법학박사 • 사단법인 크레도 객원연구원

* 본 기고문은 2021년 상반기 발표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발췌하여 게재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영국의 보건의료분야의 민관협력

지난 호에서는 영국의 보건의료거버넌스와 행정조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개관

영국은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개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이다. 영국은 “보건의료 민관협력의 선구자(Pioneer of Healthcare PPP)”로 자칭한다. 영국에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방식이 흔한데 보통 사업시행자가 신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조달, 시공,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 자산은 학교나 병원부터 방위시설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¹ 영국은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

¹ World Bank,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3, 2017, p. 6.

어지는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한다.² 영국에서 민관협력의 목적은 인프라 구축 그 자체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산출물을 얻는데 있다. 또한 강력한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 프로젝트별 접근 방식에서 장기적인 결과를 위한 전략 및 정책 개발을 포함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PFI가 민간투자자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복잡하고 경직된 계약을 공공부문에 연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새로운 시설 개발 과정에 종종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수탁업자들은 기존의 계약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과 자원의 재배치 등의 임기응변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고,³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재협상도 필요한데 이것은 비용증가를 야기한다. 또 수탁업자들은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하여 이러한 위탁계약의 경직성과 구속성은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⁴

2. 재공영화

영국은 「1972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 제1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들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물품이나 재료의 공급 또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⁵ 영국에서의 아웃소싱(민간위탁)은 1980년 마가렛 대처 수상 시절 강제 경쟁 입찰(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이 도입된 이후 시작되었으며, 신노동당(New Labour)이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가 강화되어 가는 입장으로 변경해 가는 경향이 있다.⁶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는 2010년대 영국에서 나타나는 재공영화 정책으로 이어

² 오준근, “영국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계약규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제42집, 414면.

³ Fulcrum, Explaining LIFT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models : Case study, 2021, p. 2

⁴ 선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의 법적 과제”, 『지방생존과 정책법』(경인문화사, 2021), 11면.

⁵ 선정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영국과 독일의 재공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제20권 제2호, 166면.

⁶ “Why councils are bringing millions of pounds worth of services back in-house”, The Guardian, 2019. 5. 29. 기사,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9/may/29/bringing-services-back-in-house-is-good-councils>, (최종방문일 2021. 9. 16.).

졌다. 그 법적 배경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장책임을 인식하고, 공영화(insourcing)⁷가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직접적인 민주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⁸ 그리고 NHS 관련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⁹

현재 NHS 내에서 인소싱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보건사회부는 2018/19년에 민간 부문에서 의료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약 90억 파운드(예산의 7.3%)를 소비했다. 이는 전년도와 같으며 2016/17년 7.7%에서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 가치를 초과하는 서비스에 한해 입찰을 하게 하는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¹⁰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NHS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지속되고 있다.

3. NHS Contracts

영국에서는 NHS의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과 제공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서비스 제공과 구매가 계약의 형식(NHS contracts)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¹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NHS 병원과 앰블런스 서비스를 자가 관리 신탁(self-managing trusts)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공급자”들은 공공기관의 통제로부터 분리되

⁷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공영화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체가 사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운영의 공영화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재공영화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재지방화(local government insourcing)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선정원, 앞의 논문(주 31), 167면.

⁸ APSE, The value of returning local authority services in-house in an era of budget constraints, Report by APSE for UNISON, 2011, p. 38.

⁹ Capita라는 민간 기업은 NHS의 부수적 업무인 환자의 기록 이전, 연금 관리 및 진료에 대한 지불을 담당하였는데, 해당 기업은 2018년 하반기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하여 4만 7천명이 넘는 여성 검진대상자들에게 초대장과 알람 편지를 미리 보내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게 하였고, 심지어 위반사항이 발생하고도 2개월이 지나서야 NHS에 상황을 보고하였다는 점이 크게 문제 되었다.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NHS 잉글랜드가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요구하였고, 재공영화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NHS 자궁경부암 검사 프로그램 운영을 2019년 6월부터 직영제로 단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NHS 잉글랜드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Capita to be stripped of NHS cervical screening contract following issues”, 영국 의학신문 PULSE 2019. 3. 20. 기사., <https://www.pulsetoday.co.uk/clinical/clinical-specialties/cancer/capita-to-be-stripped-of-nhs-cervical-screening-contract-following-issues/20038426.article>, (최종방문일 2020. 9. 17.).

¹⁰ Campbell, D., “NHS privatisation to be reined in under secret plan to reform care”, The Guardian, 23 September 2019,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nhs-privatisation-to-be-reined-in-under-secret-plan-to-reform-care>, (최종방문일 2021. 9. 17.).

¹¹ 이현수, “영국법상 정부계약과 법치주의”, 『일감법학』(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제30호, 186면.

어 “내부시장(internal market)”에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¹²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 서비스의 특성, 높은 진입 비용 및 인구 전체에 걸친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시장 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NHS는 경쟁의 이점과 공적 자금 유지가 결합되는 준 시장(quasi-market)의 대상이 된다.¹³

NHS Act에 따라 NHS 내부의 경쟁은 NHS 계층 내 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부문별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규제되었으나, 「2012년 건강 및 사회보장법」으로 인해 NHS 내부의 경쟁과 기존 국가 경쟁법제 간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리고 NHS의 경쟁 규제에 있어 국가의 경쟁 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식화함으로써 내부적 초점을 맞추었던 제도를 외부 경쟁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하였다.¹⁴ 즉 의료의 질 개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선택과 경쟁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¹⁵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커미셔너)과 그들의 위원회는 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확보하고 최고의 부가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공공 계약 규정을 포함한 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비차별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NHS 경영이 아웃소싱 되면서 심각하고 풀리지 않는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나설 때 어려움이 더 극명하게 발생하고, 그들은 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계약은 공법적 감독 밖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⁶

¹² Arrowsmith, J., Sisson, K., “Decentra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case of the U.K. National Health Service”, Industrial Relations, 2002, 57(2), p. 355.

¹³ Olsen, J. A., Principles in Health Economics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¹⁴ Sanderson, M., Allen, P., & Osipovic, D., “The regulation of competition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What difference has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made?”,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2017, 12(1), 1-19.

¹⁵ Monitor, Briefing note: Substantive guidance on the procurement, patient choice and competition regulations, 2013.

¹⁶ Newdick, C., “From Hippocrates to Commodities: Three Models of NHS Governance: NHS governance, regulation, Mid Staffordshire Inquiry, health care as a commodity”, Medical Law Review, 2014, 22(2), 162-179, <https://doi.org/10.1093/medlaw/fwu010>.

4. 영국의 코로나 상황 하의 민관협력

1) NHS 코로나 검사 및 감염자 추적 서비스 논란

영국은 구글과 애플이 공동개발한 접촉 추적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기기 데이터를 로컬에서 저장하는 대신 보건 당국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¹⁷ 그러나 영국의 컴퓨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영국의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투명성 문제와 임무 변경 우려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일반적 데이터 보호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였다.¹⁸

한편 접촉자 추적 앱과 별도로 NHS의 코로나 검사 및 접촉자 추적 센터(NHST&T)는 2020년 5월부터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주도해왔다. 비상 상황에 최대한 빨리 테스트 및 추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컨설턴트가 필요했다는 이유였지만, 영국 보건사회부는 2020년 5월 민간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Deloitte)와 Covid-19 테스트 센터를 운영하고, 조달업체 세르코(Serco)와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2년간 370억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공익을 위해 작동하는 공중 보건 시스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맹목적으로 헌신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¹⁹ 그리고 정부는 NHS 공공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적으로 적절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NHS의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추적 서비스는 공무원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및 추적 서비스의 운영을 2021년 4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조직인 영국 보건보안국(UK Health Security

Agency)에 넘겨주었다.²⁰

2) 영국 정부 백신 수급 과정 및 성과

영국 정부는 2020년 4월 영국을 위한 신속한 백신 확보, 백신 개발 및 접근성 증대, 영국 백신 역량 구축을 위해 영국 정부 백신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다. 초기 대응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영국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핵심은 백신 수급이었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가 잠재적 백신 연구 개발 지원, 구입할 백신의 선택, 충분한 양의 백신에 대한 영국 접근성 확보, 제조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하는 영국의 백신 공급을 확보할 책임을 졌다.²¹ 그리고 2020년 9월 보건사회부 장관은 거버넌스 변경을 결정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백신을 배포할 방법을 계획할 책임을 지고, NHS 잉글랜드 & NHS Improvement와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이 배송 모델 설계 및 구현, 보관 및 배송 준비를 포함한 백신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달을 주도하고 있다.²²

영국 정부 백신 태스크 포스의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옥스퍼드대학교 백신 개발 파트너십을 비롯하여,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첫 계약 국가가 되고,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COVAX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백신 배포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백신 태스크 포스를 통한 이례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영국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전개하였고, 2020년 12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8일 현재 영국 전역에서 4,537만 명(인구비율 68%)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총 4,997만 명 이상(인구비율 73.1%)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²³

¹⁷ Gould, M. (Chief Executive, NHSX), Dr. Lewis, G., "Digital contact tracing: protecting the NHS and saving lives", 24 April 2020, <https://www.nhs.uk/blogs/digital-contact-tracing-protecting-nhs-and-saving-lives/> (2021. 4. 19 확인).

¹⁸ N. Lomas, "UK privacy and security experts warn over coronavirus app mission creep", 29 April 2020, Tech Crunch, <https://techcrunch.com/2020/04/29/uk-privacy-and-security-experts-warn-over-coronavirus-app-mission-creep/> (2021. 4. 19 확인).

¹⁹ McCoy, D., "Coronavirus has exposed the dangerous failings of NHS marketisation", the Guardian 2020. 5. 5. 기고문,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y/05/coronavirus-nhs-marketisation-pandemic?CMP=Share_iOSApp_Other (2021. 2. 1. 확인).

²⁰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and UK Health Security Agency, Press release, New UK Health Security Agency to lead response to future health threats, 2021. 3. 24.

²¹ C&AG's report, Investigation into preparations for potential COVID-19 vaccines, HC1071, 14 December 2020, Summary p. 1

²² C&AG's report, 위의 보고서(주 47), Summary p. 5

²³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GBR>, (2021. 12. 8. 확인).

5. 시사점

영국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책임성 확보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데, 국가와 민간이 합리적 역할을 정립함에 있어 민간서비스기관이 수요자 즉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하여 품질 관리와 같은 국가의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영국 NHS 서비스 재공영화 사례에 비추어보면, 공공 부문이 제공하던 서비스에 민간 기업의 시장 논리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사업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익과 리스크를 배분된다는 장점보다는 비용 상승의 역설이 일어나고,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컸다. 그리고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은 결국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재공영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이 오히려 효율을 확보하고, 주민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였다는 영국의 선례를 참고하여 감염병 관리와 필수 의료 분야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책임을 지고 제공하게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백신 개발 및 확보와 관련하여 출발은 영국과 한국 모두 2020년 4월로 시기는 같다. 그러나 영국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방역과 백신의 중요한 두 축 중에서 백신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그 과정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의사 진행과 결정사항은 빠르고 적확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의 초고속 작전에는 막대한 예산 지원도 함께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대학과의 협업, 국제적 기구 COVAX와의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생산과 공급에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이는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으로 달성한 민관협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방역에 중점을 두었다. 즉 초동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진단키트와 같은 가용 자원 동원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백신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백신 자급화를 위한 노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그리고 2021년 3월에서야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부족, 국내 연구진의 백신 개발과 연구 축적이 부족한 이유와

기존 사스, 메르스 사태에 있어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경험한 학습효과도 영향이 있겠다. 그러나 백신 수급이 가능해진 이후 발생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강제적인 백신접종 계획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원칙을 벗어난 시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면역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존 방역 정책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위드코로나 정책(일상 회복 정책)은 오히려 확진자 폭증, 의료계 부담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하루 빨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CREDO North Korea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크레도는 전환기 정의 구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탈북민의 정착 지원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들을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toP : Responsibility to Protect)논의의 발전과정 (1)

한예정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상근변호사

1. 들어가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의 인권침해사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며,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인권보호에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공동체가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수락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범죄에 대한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국제재판소를 설립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는 북한의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을 확인하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책임(Rto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논의는 1990년대 인도적 간섭의 실패와 반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르러 국제사회의 개입을 책임과 의무로 접근하면서 시작하였다.

보호책임은 주권국가에게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할 1차적 의무가 있는데, 해당국가가 심각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를 중지할 의사가 없거나 막을 능력이 없을 경우 국제 공동체에 2차적 보호책임이 있다고 하여, 국가주권과 인권적 가치의 충돌에 대한 타협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보호책임 개념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되는 2001년 ICISS보고서의 내용과 그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보호책임 개념의 성립 과정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는 2000년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적 간섭이 주권에 대한 침해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캐나다 정부에서 설립한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이하 ‘ICISS’라고 함)가 2001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보호책임은 2004년 고위급 패널 보고서, 2005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2006년 무력충돌상황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와 관련된 결의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2009년 유엔 총회 결의 등 유엔의 여러 기관에서 다루어지며 발전해왔다.

3. 2001 ICISS 보고서 주요 내용

ICISS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기초원칙에 대하여, “주권은 책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해당 주권국가에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이 내전이나 반란 혹은 국가의 실패상태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고, 해당 주권국가에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개선할 역량이 없을 경우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이 있으며, 이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우선한다”라고 실시한다.¹

또한,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근거를 “첫째, 주권개념에 내재된 의무, 둘째,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고 규정하는 유엔 헌장 제24조, 셋째, 인권보호에 관한 다수의 인권규약과 협약 및 인권선언, 국제인도법 및 국내법에 있는 구체적 법적 의무, 넷째, 국가, 지역기구, 국제기구의 발전하고 있는 관련 관행”으로 제시하고 있다.²

나아가,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가 감당할 실제 이행 단계를 (1) 대규모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예방책임(responsibility

to prevent), (2) 대규모 인권침해 발생시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응책임(responsibility to react), (3) 대규모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된 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질서를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재건 책임(responsibility to rebuild)의 3 단계로 설명한다.³

나아가, 인권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에 있어 가장 적합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로 보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보호책임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사무총장이 보호책임의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⁴

그러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1) 대규모 인명살상이나 인종청소가 개입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군사적 개입 필요성의 판단에 있어 군사 개입 원칙에 따라 사전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다수가 지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사태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적합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신뢰와 지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보호책임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책임이 군사행동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1) 정당한 이유(Just Cause), (2)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 (3) 최후의 수단(Final Resort), (4) 합법적 국제기관에 의한 시행(Legitimate Authority), (5) 비례원칙에 맞는 수단일 것(Proportional Means), (6) 합리적인 성공가능성이 있을 것(Reasonable Prospect)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동 보고서는 학문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이고 유용한 구체적·직접적·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발간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면서, 보호책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총회,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우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상황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유엔 총회가 더욱 많은 관련 결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새

1 ICISS Report, Synopsis, (1) Basic Principles

2 ICISS Report, Synopsis, (2) Foundations

3 ICISS Report, Synopsis, (3) Elements

4 ICISS Report, Synopsis, Right Authority

로운 협약의 제정 및 UN 헌장 개정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 인권보호 목적의 무력개입을 원칙규정으로서 정립하고, 자국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상임이사국이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 군사개입을 승인하는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총회는 보호책임의 기초원칙을 포함한 선언적 결의안을 채택하고, UN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유엔총회 의장과 적절한 토의를 통해 보호책임 원칙의 실행에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2001 ICISS 보고서에 대한 평가: 인도적 간섭과의 비교

ICISS 보고서는 국가중심의 통제권한으로 여겨온 기존의 주권 개념을 '주권은 책임을 내포한다'라는 주권과 간섭의 충돌이 아닌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인도적 간섭의 경우 대규모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대응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동 보고서에서는 (1) 인권침해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밝혀야 할 예방책임, (2) 제재, 국제적 소추, 군사적 개입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책임, (3) 군사적 개입 이후 회복과 재건, 화해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제공하는 재건축책임과 같이 3 단계 이행방안을 제시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인도적 개입 논의 당시 간섭의 주체는 국가 내지 국가 집단으로서 개별국가였지만, 동 보고서는 1차적 보호책임의 주체를 주권국가로, 2차적 보호책임의 주체를 국제공동체로 보았다. 무엇보다,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상황의 경우 무력사용의 주체는 안전보장이사회로 제한하면서, 상임이사국은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다수가 지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임이사국거부권 행사를 제안한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인도적 간섭은 무력사용을 통한 간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였음에 반해,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 상황'과 '무력사용이 필요한 상황' 두 가지로 나누어 비무력적 조치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대상인 4대 범죄행위 이외에 국가실패로 인한 내란 또는 대규모 기아사태와 자연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를 포함시켜 광의의 보호책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살해죄가 주관적 의도를 요구함에 반하여, 동 보고서는 주관적 의도 없이 집단살해의 객관적 상황으로만 이를 판단하여 그 범위를 넓힌 특색이 있다.

5. 나가며

이상과 같이, 2001년 ICISS 보고서는 책임으로서의 주권 개념의 도입, 무력적 개입을 넘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안의 도입, 과거 개별국가로부터 국제공동체로 간섭의 주체를 전환하고 무력 개입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을 권한 있는 주체로 한정하는 등 보호책임의 기본적 틀을 놓았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였으나 이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삭제되었고, 동 보고서가 국가실패로 인한 내란 또는 대규모 기아, 자연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의 경우까지 포섭하는 광의의 보호책임을 제안하였으나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4대 범죄행위에 대하여만 보호책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등 많은 것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발전과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의 첫 번째 탈북과 첫 사랑 이야기



일러스트 | 최수민 작가

김보빈 작가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출생하였다.
 생계를 위해 탈북을 감행하였다는 이유로
 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3년의 형을 마치고
 2012년 6월 탈북에 성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2남 2녀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중국으로 넘어가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북한을 떠난 것은 2003년 정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만 5년이 되는 해였다.

나는 스무 살이 되기까지 인생의 초반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사회 초년생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나는 결국 스스로 난관을 헤치며 나아가야만 했다.

1998년 3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6월부터 농장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첫 출근 준비를 하려다 보니 농장에서 작업할 마땅한 신발조차 없었다. 나는 외상으로 돌아오는 잠자 철에 잠자 10킬로를 주기로 하고 편리화 한 켤레를 사서 신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의 가난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엄마와 셋째 언니가 연이어 세상을 뜨고, 두 언니마저 출가한 우리 가정 경제에 사회 초년생인 나의 작은 힘이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농장을 열심히 다녔지만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살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희망은 없었다.

길거리에서 매일 마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떠한 전환점이 없이는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 첫 번째 탈북

결국 나는 장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장사 밑천이 없었기에, 중국에 먼저 들어갔다 와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01년 6월, 임신 8개월의 임신부인 친구의 외숙모를 따라, 또 다른 친구의 언니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국경을 넘는 날, 우리 셋은 멀고 힘든 길을 정신없이 걸었다. 산을 넘고 창평과 산성을 지나 강둑 맞은 편 두만강을 건너서야 백룡이라는 조선족 동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초행길이라 그런지 참으로 멀리 느껴졌다. 그러나 친구의 외숙모는 경험이 많은 분이셨다. 인솔자도 없이 혼자 국경을 몇 번이나 넘나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식구들의 끼니를 감당하려고 북한에서 강아지나 약초를 넘겨다가 중국에 팔았다고 한다.

우리는 친구의 외숙모가 길을 안내하는 데 처음부터 믿음이 갔다. 그래서 나도 그녀를 따라 중

국에서 3일간만 장사 밀천을 벌여오기로 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다.

그날 밤, 하늘에서 쏟아지는 총총한 별들이 우리 앞길을 희미하게 밝혀줄 뿐 참으로 캄캄했다. 눈두렁에 엎드려 부복전진 하는 우리를 응원하듯 개구리들도 요란하게 울어댔다.

우리는 겨우 두만강 기슭에 도착하였으나, 어느 쪽이 깊은지 얇은지도 몰랐다. 단지 졸졸 흐르는 강물소리만 들으며 우리 셋은 서로 팔짱을 힘있게 끼고 얇은 곳을 향해 조심스레 강에 몸을 던졌다.

다행히 강은 깊지 않았고 물이 허리 정도 올라 왔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다. 밤 12시가 지난 시간이었다. 배가 고프지만 잡히지 않으려면 어디론가 빨리 찾아 들어가야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들어갈 만한 곳은 없었다. 그런데 마침 한집에서 전등 불빛이 비추어 우리도 모르게 그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 집은 마당에도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마당에 놓여있는 있는 소랭이를 발견했다. 우리는 소랭이(대야의 방언)에 뭐가 담겨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냉큼 들고 달아나, 마을길 왼쪽 건너편 과수밭으로 달려 들어갔다.

과수밭에는 마침 천막이 있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소랭이에 담겨진 음식을 정신없이 먹었다. 우리는 맨손으로 순식간에 그 음식을 다 먹어치웠다. 음식을 먹으며 비로소 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것은 배고픔도 면했다는 안도의 웃음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정상적인 밥이 아니고, 죽물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우리가 먹은 것이 개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사정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가난한 북한 현실이 중국과 대조가 되어 원통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 쪽 나라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데, 이쪽 나라에서는 개도 배가 불러 먹지도 않는 개밥이 그릇에 수북했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의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개밥을 맛있게 먹었을지 생각하니 기련하고 딱한 백성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등잔불이 없어서 밤에 빛을 보면서 살 수도 없는데, 강 하나를 건너오니 사람 없는 과수밭 천막에도 전기가 들어와 환하게 비추고 있어 시골에서도 빛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그러나, 나는 이런 소동 중에도 나라 탓은 안하고 가난하고 못난 부모만 원망했으니 지금 생각 하면 이 역시 어리석고 기막힌 일이었다.

과수밭 천막에서 밤을 새고 나니 날이 밝았다. 우리는 친구 외숙모를 따라 그 동네 박씨 아저씨 집을 찾아들어갔다. 그 아저씨 도움으로 우리는 또 다른 분을 만났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그분의 소개로 또 다른 친구의 언니는 현지에서 바로 시집을 가기로 했다. 말하자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친구 외숙모와 둘만 남게 된 나는 백룡에서 조금 내려오면 마패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느 한 집을 소개 받아 콩밭 김을 메어주기로 했다.

사흘을 일한 수고비로 300원을 벌었다. 또 그 동네에서 모아준 헌 옷들과 식사 거리를 챙겨서 다시 백룡으로 올라 왔다.

그때서야 내가 떠난 뒤 백룡에 홀로 남아있을 친구 외숙모가 생각이 났다. 친구의 외숙모는 혼자서 4일이나 산에서 지냈다고 한다. 혹시나 내가 다른 데로 팔려가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다고 했다. 혼자서 하늘도 안 보이는 무서운 산에 혼자 있었을 그녀를 생각하니 많이 미안했다. 그래서 내가 번 돈 300원의 반인 150원을 나누고 헌옷도 모두 나눴다.

이제 다시 두만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웬일인지 무서운 생각이 앞서 선뜻 두만강에 발을 담구지 못했다. 그래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밤 12시를 맞추어 두만강을 건넜다.

새벽녘 우리는 무사히 강을 지나 산성 마을에 도착했다. 산 밑 고랑에 엎드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5시가 되어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헌옷 중에서 골라서 갈아입었다.

나는 다시 길을 걸어가며 친구 외숙모에게 일하러 간 나를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왜 산에서 4일이나 기다렸냐며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중국 변방대가 하루에도 몇번씩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그래서 집안에 있을 형편이 안 되었다고 말을 한다. 그냥 산에 있는 게 나아서 박 씨 아저씨가 날라다 주는 밥을 먹으며 나를 기다렸다고 한다.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나를 홀몸도 아닌 채 기다린 그녀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언니 미안해요. 이젠 우리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요.”

중국에 갔다 온 것은 둘 만의 비밀로 하고 결국 7일 만에 집에 도착하였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150원을 북한 돈으로 환전하여 장사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번의 탈북으로 나의 장사 밑천은 마련되었다.

— 나의 첫 사랑 이야기

열심히 장사에만 힘을 쓰던 내 인생에도 장밋빛 같이 아름다운 날이 찾아왔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평양 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서 알게 된 언니가 어떤 군인을 소개해 주었는데, 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하루는 물건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우리 집에 낯선 군인이 와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군인은 다름 아닌 소개받았던 그 군인이었다. 그는 중매꾼 역할로 내가 아는 정치 지도원까지 데리고 찾아 온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이미 나와 약속된 사이인 줄 알고 마음에 든다며 승낙을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첫 이미지가 안 좋다고 나는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밤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한 번도 변함없는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더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는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그런데, 내가 시집을 가야 할 곳은 아버지 근처가 아닌 멀리 강원도 판교군 지하리라는 곳이었다. 북한에서 살면서도 이런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엄마도 없이 떠나 홀로 집에 남겨질 아빠를 생각하니 멀리 시집을 갈 수 없었다. 나는 아빠에게 새 엄마를 헤드리려고 찾아 나섰는데, 아빠는 오히려 화를 내시며 새 엄마가 들어오면 자녀를 낳게 될까 염려되신다며 재혼을 만류하셨다. 재혼을 원치 않는 아빠를 생각하니 나는 더욱 시집을 갈 수 없었다.

결국 멀리 시집을 가려면 아빠와 동생들이 먹을 식량을 많이 사놓고 시집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장사하던 돈은 아빠가 드실 식량을 사놓고 나머지 돈은 남편들의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시집간 언니들에게 장삿돈을 하라고 주고는 나는 또다시 지난번에 중국에 함께 갔던 임산부 언니를 찾아갔다. 언니는 이미 출산하고 아기는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 다시 중국 가서 한 달만 돈을 벌어서 돌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언니는 한 달만 벌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음력설이었던 2003년, 2월 8일 또다시 나의 탈북의 길이 시작 되었다.

*다음호에서 계속 됩니다.



CREDO Interview

크레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세상을 더욱 가치있고
살만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열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희망을 쏘아 올리는 사람들, 언제나 청년인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을 소개합니다



김화량 청년 • 전국학생수호연합

——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저희 단체는 **학생들의 정체성과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긍심을 수호하고, 사상의 자유, 즉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학생들을 정치 현장에 동원하고, 사상적으로는 페미니즘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라는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해체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이 건강한 정체성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베’, ‘친일파’, ‘혐오주의자’ 등의 악의적인 정치적 낙인을 찍으며 사회적 살인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을 빙자하는 사상주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의 자긍심을 발전해 나아감과 동시에 이러한 학생들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는 것을 ‘학생수호’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전국학생수호연합’입니다.

저희 단체는 ‘학생수호’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교사들의 사상주입을 제보받고, 사상주입에 대하여 고발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긍심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를 공부하기 위한 독서, 역사 탐방 등 각종 스터디 모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결성하게 되었는가?

전국학생수호연합의 결성은 본 단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현고의 성평화동아리, 'WALIH'(We Always Live In Harmony, 왈리)를 강제로 폐쇄시킨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인현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던 성평화동아리 'WALIH'는 남자 3명 여자 3명의 인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교사였던 김 모 교사가 “**성 담론을 다룰 때 페미니즘이 아니면 안 된다**”며, 성평화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아리를 부당하게 강제 폐쇄**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사상 독재’였습니다. 처음에는 교내에서 해결해보고자 노력했으나 학교는 해결할 의지가 없었고, 결국 외부에 사건을 알리고 공론화를 시킨 후에야 비로소 'WALIH'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평화동아리 강제 폐쇄사건이 있던 2019년 10월, 학교의 부당한 사상독재로부터 동아리를 지켜내는 과정을 지켜봐왔던 1학년 학생들은 당시 'WALIH'의 회장이었던 최인호 군에게 문제의 반일 집회 영상을 보내 오면서 ‘인현고 반일 사상 주입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교의 1학년 학생들과 성평화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인현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교사들은 **고발 학생과 정치교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왕따를 조장하고 교내 징계를 들먹이며 교내 학생들의 저항을 탄압**했고 끝내, 인현고 내부에서 ‘인현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현고로 한정되어있던 학생수호연합을 전국화하는 것을 천명하고, 2019년 11월 10일 신림역에서 ‘성평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학생수호연합이 결성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10월 결성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지난 2년간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년간 정치교사들의 사상주입으로부터 학생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 스터디 그룹인 ‘미래’를 조직하여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발전의 역사를 추적하며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역사 활동으로는 2021년에 동네 놀이터에 칠판을 끌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놓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묵인되고 알려주지 않는 이승만과 건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과 후 놀이터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놀이터교실은 주에 두 번씩 총 15차례를 진행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인 만큼 내용을 쉽게 풀어쓰도록 노력하고 수업 전체를 퀴즈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놀이터교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서, 어떤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시기에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문득 동네 놀이터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떠올랐고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적 단편만을 강조하는 사상주입 속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사를 나눠보자는 시도였습니다. 놀이터교실은 소박하지만 성공적인 끝을 맺었고 학생들에게 자긍심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상주입 제보와 관련해서 최근 역사적인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정치교사 백금렬의 불법선거운동 정황을 제보받고 해당 교사를 고발했고 최근 2심 유죄라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광주학생수호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정치교사의 불법선거운동을 포착하고 제보한 것은, 광주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백 교사는 선거권 연령이 조정되고 치러진 4.15 총선에서 본인의 제자들에게 “1번 더불어민주당과 5번 더불어민주당을 뽑으라”며 학생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문제점을 느낀 제지들과 광주의 학생들이 학생수호연합에 제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광주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거의 2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광주에서 체류하며 광주 학생들과 함께 싸워나간 결과, 1천여 명 광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정치교사 백금렬의 유죄를 끌어내면서 **인헌고 사건 당시에도 이루지 못한 정치교사의 '직위 해제'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학생들은 광주학생수호연합을 결성했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되었던 학생 활동을 다시 전개하기 위해서 **학생 사회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가 팜플렛을 나눠주며 설문 조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여론도 조사하면서 홍보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합류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의 많은 전환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저희의 활동이 학생 사회로 퍼져나가기 위해 **학생수호연합의 회원 학생들이 학교 학생회나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부에서 교육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저는 인헌고 사태의 경험자로서, 정치교사들과 학교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학교의 비상식적인 찍어누르기식 대처에서 학생의 입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례로, 학생들은 교내 징계에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없습니다. 교내 징계위원회 자체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폐쇄적인 교내 시스템에서 학생을 지키기 위해, 학생이 조금의 권한이라도 더 행사할 수 있는 **학생회 또는 학생회장**과 같이 **제도권에 진출하여 다른 학교들의 학생회장들과 연대하며 학생을 지킬 수 있는 '학생수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현재 대전, 부산 등 각지의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수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학생들과 함께 학생을 수호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학생을 올바르게 수호할 수 있는 가치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생수호에 앞장 설 학생들의 활동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REDO Culture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추구하는 진, 선, 미의 가치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크레도는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1) 세계관을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

정소영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사무총장

世界觀

세계관 | 명사(철학)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



종종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리 실통치 않은 것이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종류의 믿음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에 따라 엄마의 자궁 속에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귀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낙태 이슈가 대두되는 경우, 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 역시, 여성들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하곤 합니다. 이런 믿음과 삶의 괴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지식과 가치의 근본이 되는 믿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 그 믿음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둘째,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크게 두 가지 믿음 체계, 즉 두 가지 세계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인본주의 세계관' 또는 '사람중심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관을 진단해 보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첫째,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둘째,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원인은 인간의 타락, 즉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락이나 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따라서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없지만 청지기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무생물이나 단세포 생물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점점 고등한 생물로 진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무지와 억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진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미신적인 종교의 억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무지와 종교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이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서구 사회는 주로 종교와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8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과학이 인류 문명의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지금은 현대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성으로부터 벗어나 감성이 주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서구사회에서 도래된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원, 그 출처가 어디이기에 오늘 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우리들의 생각의 기원이 되는 현대의 사상가들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히사ishi 조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길...

정희재 음악감독



2022년은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 히사ishi 조(久石讓, Hisaishi Joe)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히사ishi 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 해의 시작으로 뭔가 서정적이면서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음악적 커리어에 있어서도 지난 달까지 소개해 드렸던 존 윌리엄스(John William)와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1950년생으로 나가노(Nakano) 출신의 히사ishi 조(본명: 藤澤守, Mamoru Fujisawa) 역시 천재성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4살 때부터 Violin School Suzuki Shinichi 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1년에 300편씩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이 장래 영화음악 작곡가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히사ishi 조는 미니멀리스트(Minimalist), 실험주의적 전자 음악(Experimental electronic), 유럽풍의 클래식 음악(European classical) 과 일본의 전통 음악(Japanese classical)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구사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가 뛰어난 연주자이며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존 윌리엄스와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과의 협업관계 처럼 히사이시 조도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Miyazaki Hayao) 감독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 40년 이상 함께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히사이시 조는 1970년대부터 음악활동을 시작해 1981년부터 본명이 아닌 지금의 이름인 히사이시 조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으며 1985년, 자신의 스튜디오인 '원더 스테이션'(Wonder Station)을 설립하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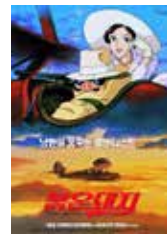
대표작들로는, '천공의 성 라퓨타(1986), '이웃집 토토로'(1988), '마녀 배달부 키키'(1989), '붉은 돼지'(1992), '원령공주'(1997),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 불명'(2001) 등이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TV 시리즈나 영화 작업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영화인 '웰컴 투 동막골' 그리고 TV 시리즈인 '태왕사신기'의 음악도 그가 작업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장르를 넘나드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지브리 스튜디오(Studio Ghibli)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매우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기만 하고, 꿈이란 것을 생각해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바쁘게만 돌아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히사이시 조의 음악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울 한 해는 더 나은 꿈을 꾸는, 조금은 더 미소지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사이시 조 아시아 투어 2010-2011 위드 코리아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중



KT Kim 작가의 사진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최지인 대표 • Choi Contemporary Art



‘날으는 고양이’로 한국 최초로 뉴욕의 권위 있는 이미지 북 ‘비지오네르(Visionaire)’의 주목을 받았던 케이티 킴(KT Kim)은 한국은 물론 뉴욕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패션사진작가이다. 1998년 갤러리 샹터에서 서울을 주제로 한 첫 개인전 ‘나의 1990년대’를 열었으며, 2002년에는 뉴욕과 아바나를 무대로 한 ‘스트리트 스마트’를 펴내고, ‘마담 휘가로’에 기고하였다. 2004년에는 ‘보그 코리아’ 8주년 특집 ‘PEOPLE’을 발간해 패션과 다큐멘터리를 접목시킨 새로운 차원의 패션사진작가로서 활동 영역을 넓힌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절, 동경 시브야에서 냥택(길고양이가 집사를 간택하는 행위)을 당한 후, 23년간 반려묘와 함께 했던 작가와 평소에 길고양이 동물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기획자, 그리고 NFT기반의 혁신적 아트마켓 플랫폼 아트 토큰(Art Token)이 뜻을 같이 하여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시회의 제목은 1984~2004년까지 일본 1,000엔권 지폐 초상화의 주인공이자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나츠메 쇼세키의 대표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빌렸다. 이 소설은 시니컬하면서도 위트있는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세계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다.



오늘날 길고양이는 사람과 서로 공존하는 대상이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집과 사료만 챙겨주어도 음식물 쓰레기도 덜 뒤지게 될 뿐만 아니라 TNR(Trap-Neuter-Release의 준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 시키지 않고 중성화수술을 한 후 다시 방생하는 것)사업이 더 수월해서 개체 수 증가를 막을 수도 있다.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자유연대가 파주에 건립할 제2 온센터에 기증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에 있는 온센터는 국내 최초 선진형 동물복지 시설로 2013년 8월 완공됐다. 건물 총 6동, 운동장 8개를 갖춘 이 시설에 현재 개, 고양이 250마리가 보호받고 있고(외부관리 포함 350마리) 연간 18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온센터를 통해 새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다. 남양주의 온센터가 주로 개를 위한 보호공간이라면, 파주에 생기게 될 제2 온센터는 고양이중심의 보호소가 될 예정이다.

고양이 사진전을 통해서 길고양이 뿐 아니라 버려지고 학대받은 고양이와 인간들의 “공생”을 위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아트토큰 홍지숙 대표의 추천글

고대부터 현재까지 고양이는 개와 함께 반려동물로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다. 특히 고양이는 회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신의 후손이라고 여길 정도로 귀하게 여겼기에 이집트 벽화에서 고양이의 존재감은 다른 동물에 비해 크게 느껴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에 많은 풍속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노란 고양이가 나비를 놀리다(黃猫弄蝶 황묘농접)’, 변상벽의 ‘모작도’, 그 외 길고양이를 소재로 한 김득신의 ‘야묘도추(野猫盜雛)’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양이는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회화 속에 등장하는데 그 맥락이 현대에 이어져서 최근 각광을 받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의 기원도 고양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재미나다. 최초의 NFT 게임이라고 불리는 ‘크립토키티’는 고양이들을 교배해서 희귀한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형태의 게임이다. 그런데 이 고양이 고가에 거래되면서 관심을 끌며 최근 아트계의 큰 화두가 되는 NFT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전시는 이 시점에서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 시대상을 다시 한번 조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아진다. 글로벌 패션 사진작가로 유명한 케이트 김(KT Kim)이 세계 각국에서 길에 버려진 길냥이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렌즈에 담아온 작업들을 첫번째로 공개하는 전시인 점도 매우 흥미롭다. 주인공인 고양이뿐 아니라 그 고양이가 찍혀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성과 추억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동물을 사랑하는 관객뿐 아니라 사진의 시간과 공간의 순간에 대한 기록성을 사랑하는 많은 사진 애호가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전시가 되리라 기대된다.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2022년 1-2월
정규프로그램

SAINT PAUL WORLDVIEW ACADEMY

이 세상 속에서 주류가 된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등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담은 다양한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지원: www.saintpaulworldview.org

* 위의 홈페이지에서 정규프로그램을 클릭한 후 각 프로그램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모든 과정은 온라인 중 수업으로 진행

과정명	세계관 특강	현대의 문을 연 고전들	포스트모던 길라잡이
교재	정소영 -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	다윈 - 「종의 기원」, 프로이트 - 「꿈의 해석」, 마르크스 - 「공산당 선언」, 니체 -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베버 -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승만 - 「독립정신」	낸시 피어시 - 「완전한 진리」, 리처드 도킨스 - 「만들어진 신」, C.S. 루이스 - 「인간폐지」, 올더스 헉슬리 - 「멋진 신세계」, 론다 번 - 「시크릿」
대상 / 요일 및 시간	중·고등학생 월요일 오후 5-6시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월요일 밤 9-10시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화요일 밤 9-10시
수업료	10만원 (총 4주간: 1/3, 1/10, 1/17, 1/24)	20만원 (총 8주간: 1/3, 1/10, 1/17, 1/24, 2/7, 2/14, 2/21, 2/28)	20만원 (총 8주간: 1/4, 1/11, 1/18, 1/25, 2/8, 2/15, 2/22, 3/1)

